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26. 1. .

제 출 자 : 하남시장(교통정책과)

1. 제안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도록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관련 교육 내용 등을 개정하고,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 개정 내용과 지역 실정에 맞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목적 관련 위임 범위 수정(안 제1조)
- 나. 조례에 대한 용어 정의 조문 신설(안 제1조의2)
- 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 준용 규정(안 제7조제3항)
- 라.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 수단 이용대상자 구분(안 제9조)
- 마.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 수단 등록 제출서류 규정 개정(안 제10조, 별표 1)
- 바. 특별교통수단과 대체 수단 운행지역 구분(안 제16조)
- 사.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관련 조례 위임사항 규정(안 제19조, 별표 2)
- 아.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개정(별지 제1호서식)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관련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 특별교통수단과 대체 수단의 이용 대상을 구분하고,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을 따르도록 명문화하여 이용자가 다른 시·군으로 이동할 때 요금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등 운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
- 하지만 신설된 조례 제1조의2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를 약칭하는 규정이 현행 제2조와 중복되고 현행 제3조와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한 중복,

조례 제17조 제3항 제1호에서 인용된 시행령 제14조의5가 현행 시행령 제14조의6으로 조문 이동에 대한 미반영,

제19조에서는 제1항에서 새로 추가된 별표 명칭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으며, 제2항에서는 개정 조례 제7조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으로 약칭하였음에도 ‘법 시행규칙’으로 잘못 인용되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